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사회적경제 분야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4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사회적경제	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” 급	1명	임용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	사회적경제마을 자치센터 (사회적경제과)	· 사회적경제 발굴·육성을 위한 상담, 교육 및 홍보 · 생활상권 기반사업 기획 및 운영 ·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
	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마” 급	1명			· 사회적경제 발굴·육성을 위한 상담, 교육 및 홍보 · 그린벤처 육성사업 기획 및 운영 · 사회적경제조직 교류협력 체계 구축

※ 근무실적 평가 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(법률 제18208호, 2021.6.8.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1614호, 2021.4.6.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, 2021.2.16.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(제731호, 2018.8.29.)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· 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기준일 : 채용공고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“라” 급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“마” 급	1. 1년 이상 임용예정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공공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) 또는 민간부문(법인, 단체 등)의 사회적경제 관련 실무경력

※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조건 : 주 5일 35시간 (1일 7시간 근무)

○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

구 분	임용등급	연봉액(천원)
8급(상당)	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34,320
9급(상당)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9,168

※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(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, 별표13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예상 연봉액 (하한액×35h/40h)
8급(상당)	54,984	39,222	34,320천원
9급(상당)	48,415	21,906	19,168천원

○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10. 25.(월) ~ 10. 27.(수)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 · 우편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 · 인터넷 접수 불가)
 - ※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(등기우표 부착) 동봉
 -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(서대문구 연희로 247, 구청 제3별관 8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(본관) 1층 민원여권과
 - 수입증지 가격 : 5,000원
 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	2021. 10. 29.(금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 11. 01.(월) 예정	
면접시험	2021. 11. 04.(목) 예정	시간 및 장소 별도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1. 11. 05.(금) 예정	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(증지) : 5,000 원 (서대문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)

※ 응시원서에 수입증지 부착하여 접수처(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)에 제출

○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7)’ 추가 제출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 및 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☎ 02-330-8298)